

자연특별시

괴산愛
함께
살아요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WHY 괴산인가?

-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속리산국립공원(화양, 쌍곡계곡), 산막이 옛길, 문광 저수지 등
-  **자연특별시 괴산**
전국 최초 유기농업군 선포, 유기농업의 지원 및 육성 등
생산자 단체 (한살림, 흙사랑, 생협)의 본거지
-  **전국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 가능**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
-  **다양한 귀농귀촌지원정책 추진**
귀농인의 집을 비롯하여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단지 기반조성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등
-  **귀농귀촌인협의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자연특별시

괴산愛 함께 살아요

01 귀농 귀촌지원 및 괴산군 지원사업

- 1. 귀농귀촌이란? 7
- 2.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8
- 3. 괴산군 소개 11
- 4. 괴산의 미래확보 13
- 5.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16
- 6. 상생교류의 생동하는 농촌조성..... 17
- 7.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8
- 8.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20
- 9. 귀농귀촌 교육 22
- 10. 괴산군 주민지원 정책..... 23

02 토지 종합정보

1. 농지의 소유	27
2. 농업경영체 등록	29
3. 농지전용 허가	30
4. 산지전용 허가	31
5. 농지구입 등 세금 감면	32
6. 주택건축 절차	33
7. 건축신고	36
8. 건축물 착공신고	38
9.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택 신축	39
10.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42
11.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주택 신축	43
12. 농지은행 제도	44
13. 급수 공사 시행 절차	47

01

귀농귀촌 지원 및 괴산군 지원사업

귀농귀촌이란?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괴산군 소개

괴산의 미래확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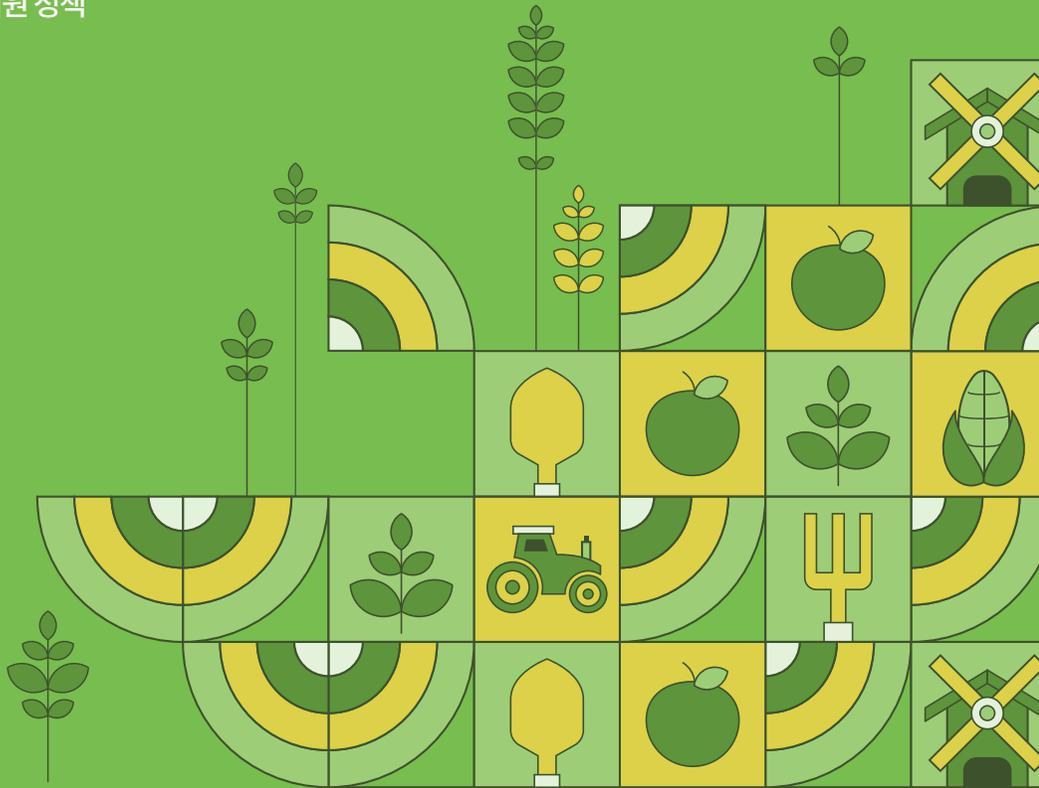
상생교류의 생동하는 농촌조성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귀농귀촌 교육

괴산군 주민지원 정책



1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귀농귀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7.21. 시행)



귀농 (歸農)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촌 (歸村)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2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앓 함께살아요

귀농귀촌 준비 및 절차



성공 귀농귀촌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낌 없이 지원합니다.



1단계 귀농결심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확신이 생길 때 결심을 굳혀야 함



2단계 가족협의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
가족의 동의는 절대적이며 귀농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



3단계 영농체험

농촌일손돕기, 귀농인의 집 체험



4단계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몇 가지 후보작목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상담



5단계 영농기술습득

귀농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6단계 정착지 물색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7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8단계 영농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귀농 준비도 자가 테스트

다음에 내가 귀농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적응 테스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에 "O"로 표시하세요. 항목마다 합계 점수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 보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준비정도를 파악해 보세요

(자료 : 통합농업교육 정보서비스)

평가기준(점수)	매우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5	4	3	2	1

진단(A) 귀농에 대한 적성	점수				
	5	4	3	2	1
1. 직업으로서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귀농 경험자와 만나거나, 체험단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다.					
3. 지금까지 경험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일이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았다.					
4.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싶다.					
5. 자연재해나 기술부족으로 수확이 전무인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것은 기존 농가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합계	[]점				

진단(B) 영농에 대한 의욕, 동기	점수				
	5	4	3	2	1
1. 건강,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					
2. 동물이나 식물, 생물 등을 좋아한다.					
3. 단순 작업을 묵묵하고 꾸준히 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귀는 데 힘들지 않다.					
5.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싶다.					
6. 사무실 작업보다는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좋다.					
7. 혼자보다 여럿이 일하는 것에 더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					
합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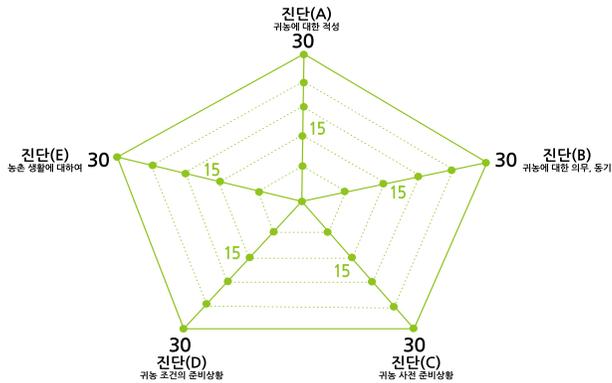
진단(C) 귀농 사전 준비상황	점수				
	5	4	3	2	1
1. 귀농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기관 상담, 교육연수·체험행사 참가, 인터넷 정보 활용)					
2.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까? 라는 선택이 거의 정해져 있다.					
3. 어디로 귀농할까?(지역)라는 선택이 거의 정해져 있다.					
4. 실제로 귀농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5. 가족 구성원들이 귀농에 동의하고 있다.					
6.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합계	[]점				

진단(D) 귀농 조건의 준비상황	점수				
	5	4	3	2	1
1. 지금까지 1년 이상에 걸쳐 농가, 농업법인 등에서 본격적으로 연수를 받았다.					
2. 귀농에 정지에 귀농시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이 살고 있다.					
3. 농지를 취득(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영농자금이 부족하여 용자를 받을 경우,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이나 담보가 있다.					
5. 경영에 대한 일정한 지식(복식부기 등)은 있다.					
6.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자신이 있다.(마케팅 관련 업무경험, 직장 동료, 친구 등의 네트워크 활용 등)					
합계	[]점				

진단(E) 농촌생활에 대하여	점수				
	5	4	3	2	1
1. 영농자금 외에 당면한 생활자금(1~2년 정도)을 준비하고 있다.					
2. 농업 이외에 본인 또는 가족 중 별도의 수입원이 있다.					
3. 영농 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농지와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농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농촌생활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시 소통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6. 농업에 관한 공동작업과 지역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합계	[]점				

> 상기 진단별 점수를 아래표에 기입하여 총점을 합산해 보세요.

총점표 (150점)	진단 A	진단 B	진단 C	진단 D	진단 E	합계



자신의 테스트 점수를 진단 분야별로 표시한 후 연결 지어 보세요. 정오각형의 그림에 서 여백이 많은 분야에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보기

120~150점

귀농에 대한 적응력이나 의욕, 준비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귀농조건은 일단 갖추어 졌다고 보여 집니다.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선배들을 통한 체험담뿐만이 아니라 실제 연수과정이나 농촌체험을 통해 귀농에 대한 지식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원제도 등도 변경되거나 신설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늘 염두에 두시고, 농촌에 들어가서서 처음 알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을 것이므로 농촌생활도 영농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75~119점

귀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적응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귀농에 대한 망설임이 보다 명확해질거라고 봅니다. 주말농장경험, 단기 연수과정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감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배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30~74점

귀농하기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농선배들로부터 체험담을 듣거나, 농촌체험과정을 통해 귀농비전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농업이 나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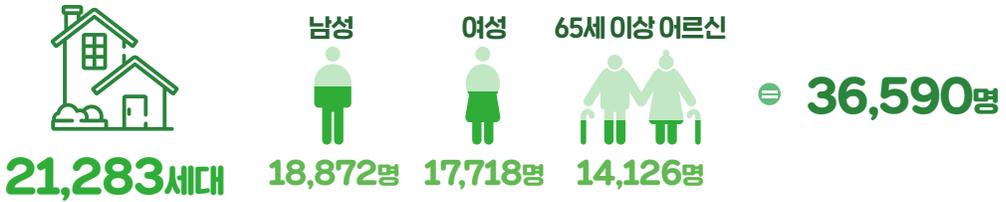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괴산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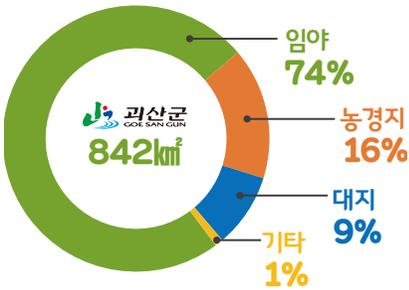


괴산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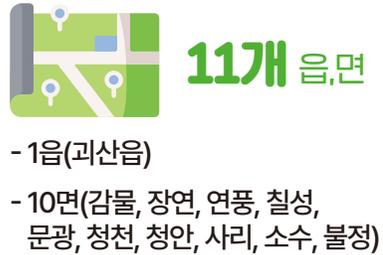
■ 인구수 (2023. 12. 31. 기준)



■ 면적



■ 행정구역



■ 의료기관



병원:3개 / 의원:10개 / 한의원:6개 /
치과:6개 / 보건소:30개

■ 학교



대학교:1개 / 고등학교:1개 /
중학교:8개 / 초등학교:14개

농업 현황

읍·면	면적(km ²)	인구(명)	농·특산물
괴산읍	49.6	9,353	절임배추, 사과, 고추
감물면	45.7	2,028	감자, 표고버섯, 인삼
장연면	61.4	1,897	대학찰옥수수, 사과, 고추, 절임배추
연풍면	93.2	2,231	사과, 꽃감, 한우
칠성면	101.8	3,104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고추
문광면	56	2,171	절임배추, 고추, 대학찰옥수수
청천면	209.3	5,135	고추, 절임배추, 사과
청안면	71.8	3,330	고추, 인삼, 수박
사리면	50.6	2,553	고추, 인삼, 벼
소수면	46.6	2,141	벼, 담배, 고추
불정면	60.4	2,647	복숭아, 콩, 연초

괴산의 명품 농특산물



괴산 고추



대학 찰옥수수



시골 절임배추

괴산의 대표 관광명소



산막이옛길



연하협구름다리



문광은행나무길

4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² 함께살아요

과산의 미래확보



충북에서 살아보기

지원사항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2~5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
프로그램 유형	귀농형·귀촌형: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이해, 지역교류 및 탐색, 영농실습 중심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형: 도시 청년(18~40세 미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 기획·운영
지원자격	만18세이상 타시도 동지역 주민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대상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과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지원사항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지원조건	전년도 설계완료 된 건에 대해서도 2024년도 신축주택이면 지원가능 설계비용 선 결제 후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해 청구금액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예정인에게 임시거주공간 제공

■ 주택규모: 8~15평 / 임대기간: 3개월 / 임대료: 월20~30만원



감물면 백양리
장소: 감물면 충민로박달길 27
☎ 010-2535-9660



칠성면 사은리
장소: 칠성면 명태재로미루길 92
☎ 010-5773-2616



연풍면 유하리
장소: 연풍면 유상3길 27-1
☎ 010-9958-3638



문광면 광덕리
장소: 문광면 호국로 95
☎ 010-2802-4960



소수면 수리
장소: 소수면 수동길 14-20
☎ 010-3456-3188



소수면 고마리
장소: 소수면 들꽃마을길 14
☎ 010-3662-9170



칠성면 송동리
장소: 칠성면 명태재로송동3길 36-8
☎ 010-2978-7423



소수면 길선리
장소: 소수면 길선길 55-2
☎ 010-9425-1339



칠성면 사은리
장소: 칠성면 명태재로 113
☎ 010-2962-2268



칠성면 울원리
장소: 칠성면 울원리 674-3
☎ 010-9711-5576



청안면 효근리
장소: 청안면 효근리 218
☎ 010-5460-3626

귀농귀촌 희망동지 운영

귀농귀촌 예정인에게 임시거주공간 제공

■ 주택규모: 15평 / 임대기간: 2년 / 임대료: 월30만원



문광면 신기리
장소: 문광면 신기리 234-1
☎ 010-5773-2616



청안면 문방리
장소: 청안면 문방리 728-2
☎ 010-5457-0541

괴산 서울농장 운영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머물면서 농촌 문화 체험, 힐링,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괴산 서울농장

- 장소: 청천면 관평3길 13 / ☎043-833-3082
- 현황: 체험비: 3~7만원 / 프로그램운영: 연 20~21회



교육동



숙소동



외부전경



실습장

■ 주요시설 현황

구분		개소	면적(m ²)	주요시설
교육동	사무실	1	34	사무공간, 회의·응접공간
	로비	1	27	전시, 맞이공간
	식당	1	110	식사공간(최대 50인)
	교육장	1	80	교육공간(최대 50인)
	공용화장실	1	38	남/여 화장실
	물품창고	1	18	물품 보관
숙소동	숙소	5	175	소형 주방, 화장실 등
	다용도실	1	25	보일러실, 세탁실
부대시설	실습텃밭	1	3,930	야외 농사체험 실습장
	기타부지	1	3,939	운동장, 조정시설 등
합계		14	8,376	

5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² 함께살아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항	- 1가구당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지원자격	- 과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과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이상 수료자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지원사항	- 영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200만원 한도내)
지원자격	- 과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과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청년귀농인(만 20세 이상 ~ 만49세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

주말농장 운영

지원사항	- 귀농·귀촌자의 영농체험과 여가활용을 위한 텃밭제공
지원자격	- 과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과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지원사항	-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원 지원(6개월간)
사업대상	- 과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조건	- 과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과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6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상생교류의 생동하는 농촌 조성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마을환경 개선사업(꽃길, 정자, 쉼터, 가로등, 마을벽화 등 조성)
지원조건	-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5가구 이상인 마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동아리 활동비, 선진지 견학비, 융화교육비 등 지원

귀농귀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지역개발, 의료, 복지, 교육 봉사활동, 환경개선, 문화증진 등 농촌에서 필요한 재능기부 활동비

7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융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해당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예산 등 기타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내용
연령	만65세 이하 세대주(2024년 기준, 1958. 1. 1. 이후 출생자)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도시지역*)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도시지역: 행정구역 상 「동」 지역/ *농촌지역: 「읍·면」지역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의 경우도 지원가능
신청기한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교육이수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1.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 [증빙: 교육수료증] *온라인 교육은 최대 40시간 인정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2.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증빙: 농지원부와 농업경영등록확인서 및 영농경력증빙]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 3. 농업계 학교출신자 [증빙: 졸업증명서]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4.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증빙: 후계농업인 선정 확인서]

<지원제외 사항>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상반기(1월~2월) 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그 해 5월에 소득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관계로 재작성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융자 조건: 이자 1.5%(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사항	대출한도	사용용도
농업창업자금	3억원	- 농지, 축사부지 등의 구입 - 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 관수시설,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임업제외
주택마련자금 (연령제한 X)	7,500만원	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 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면적 150m ² 이내)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지원절차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사전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사업상담 및 신용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현재 영농기반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용자금 상환 계획)을 자세히 작성, 사업계획의 내용이 소략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부 > 읍·면·동사무소 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단독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5.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1부 > 농협중앙회(대출창구) 6.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세무서(홈텍스 등)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사실없는 경우로 발급 1부 7. 교육수료증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발급	자격서류 (해당시) 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2. 농지원부 3. 추가 영농 증빙자료 (판매·구매영수증)→농협 등 4. 졸업증명서 5. 후계농업인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 증명 6. 농업경영체증명서	

8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대표적 피해유형



기획부동산형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피해사례: 귀농귀촌 프로그램 강의 이력, 수상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뢰를 산 A 분양업체가 영농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겠다고 1,300명의 투자자를 모집.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2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속여 총 124억원을 투자 받아 그중 27억원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형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재료 제공,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 과장광고**

피해사례: B영농조합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그럴듯한 작물, 농장으로 홍보함. 전문가의 밀착 지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의 초기 융화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공동 목표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끼리의 동질감을 형성시킴.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을 완료하고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함.



묘목상형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포장**

피해사례: C법인은 "호두나무 한 그루면 약 40kg의 알 호두를 수확해 연간 60~8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2,000만원을 투자해 임야를 구입하고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으면 10년 후부터는 연간 3,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호두나무가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데 비해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고수익 광고만 믿고 투자한 예비귀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



애견 브리딩형 **애견 브리딩,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시설, 사료 등 판매**

피해사례: D업체는 상위 1%의 고급 종묘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서 구매하겠다는 "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며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과 다른 조건의 견사 건축 등에서 발생한 피해 및 사업실패로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됨.



곤충산업형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피해사례: E법인은 "원금 100% 보장, 고수익 귀뚜라미 사업"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고,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크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게 될 대체 식량"이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임. 또한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 201억원을 가로챈.

사업참여자 피해 예방 방안 / 창업자금 신청 및 선정

- ✓ 원금보장·고수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귀농자금 대출 유도 등 광고를 조심하세요!
- ✓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비교해보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컨설팅을 받으세요!
- ✓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 후 대출 신청하세요!

피해발생 시 대응 요령

- 사회참여자** 피해 사례를 인지한 즉시 관할 시·군에 신고, 금융기관에 자금집행 중지 신청
- 지자체** 관련 사실 확인 후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공유
- 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 상담 운영 시 공지·안내 및 주무부처 보고홈페이지,
- 농식품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전파

유관기관 정보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40)

귀농귀촌 종합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창업자금 신청 및 선정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
(043-830-2735, 2775~7)

창업자금 대출 실행 | 각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영업점

9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귀농귀촌 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사업(멘토-멘티)



지원사항

연수생교육훈련비(월80만원 한도, 5개월)와 멘토수당(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5개월)지원



교육대상

귀농연수 5년미만 귀농인(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음)



교육방법

선도농가에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과정 전수받음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지원사항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정보 제공



교육대상

귀농·귀촌자 및 귀농·귀촌예정자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10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분야별 지원 시책



구분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부서
전입 지원 (7)	전입지원금(일반)	- 군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내 거주 - 최초 1회 지급 / 200,000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830-3207)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지원금] - 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 - 700,000원(1년차 30만원 / 2~3년차 20만원) [학생근로 우선선발] - 대학생 근로선발시 20% 이내 우선선발 [기숙사 및 관내 전월세 거주비 지원] - 당해연도 최초 전입 후 연말까지 주소 유지시 다음연도 상반기 지급 - 관내 전월세 주택 거주자 및 기숙사 거주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임에 한정 - 최초 1회 지급 / 300,000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차 지원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대출이자 연 1회 / 연 최대 100만원(3년간 지원)	
	청년 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만19세 ~ 만49세) - 월 100,000원 / 최대 3년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혼인신고일 기준(기준 거주자), 전입일 기준(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19세~ 만4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1,000,000원(1년차 50만원, 2년차 50만원)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일 현재 과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1구당 200,000원(자연장 : 300,000원) ※ 단, 실제비용이 기준 이하면 실제비용만 지급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830-3404)
	관내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 사망일 현재 과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1구당 1,000,000원	

구분	사책명	주요내용	추진부서
청년 지원 (8)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동아리 - 10개 동아리 / 동아리당 1백만원 * 동아리 활동경비(강사비, 재료비, 모임비 등) 지원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830-3215)
	청년 배움 지원	- 취·창업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청년 - 30명 / 1인당 연 최대 20만원 *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교재구입비 등 지출비용의 80%	
	충북행복결혼공제	- 도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농업인(만18세 ~ 40세) - 도·시군 기업, 근로자·농업인 매칭 * 근로자: 월 80만원 > 48백만원 + 이자(5년 만기) * 농업인: 월 60만원 > 36백만원 + 이자(5년 만기)	
	청년인턴제 운영	- 관내 주소를 둔 만18세 ~ 39세 미만 청년 - 관내 결혼이민자 공공일자리 지원 * 근무처: 일자리종합지원센터(12개월) * 보수: 78,880원/1일(수당별도)	경 제 과 일자리 창출팀 (830-3322, 3323)
	희망을 이루는 청년 지원사업	- 신규인력 채용 관내 기업에 인건비 지원 후 10개월 근속 직원(청년) * 인 건 비: 1인 2백만원 한도내(기업 10% 부담) * 정착지원금: 1인 6백만원 지원(6개월 분할) * 인센티브: 1인 10백만원 지원(1년 분할) * 채용시점 관내 주민등록 이전 필수	
	영농 4-H 시범	- 과산군 4-H회 회원으로 가입 2년 이상인 자 - 30백만원(지원 21백만원, 자담 9백만원) * 사업량: 1개소(2024년 기준) * 농자재 및 시설 지원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830-2776, 2733)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만18세 ~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 매년 12월 경 agrix.go.kr을 통해 신청 - 영농정착 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간)		

구분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부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12)	결혼 예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자 (결혼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백만원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830-34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인당 최대 110만원(최대 9회) ※ 시술종류, 횟수,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830-2354, 2356)
	임산부 영양제 지원	- 괴산군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대상자별 차등 지급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포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첫째아 1,200만원 / 둘째아 1,2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권 지급 -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가정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관내 출생 신고한 경우 - 1인당 1,500,000원(25,000원*12개월*5년)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830-337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 - 1인당 200,000원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인 연 600,000원(300명)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1회 진료시 5만원 한도(월 1회, 연 12회)	가족행복과 아동친화 드림팀 (830-3424)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	-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인 연 720,000원(100명) 유기농 꾸러미 지원 ※ 회당 6만원 한도(월 1회, 연 12회)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상수도 요금 50% 감면	수도사업소 운영팀 (830-3640)

02

토지 종합정보

농지의 소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구입 등 세금 감면

주택건축 절차

건축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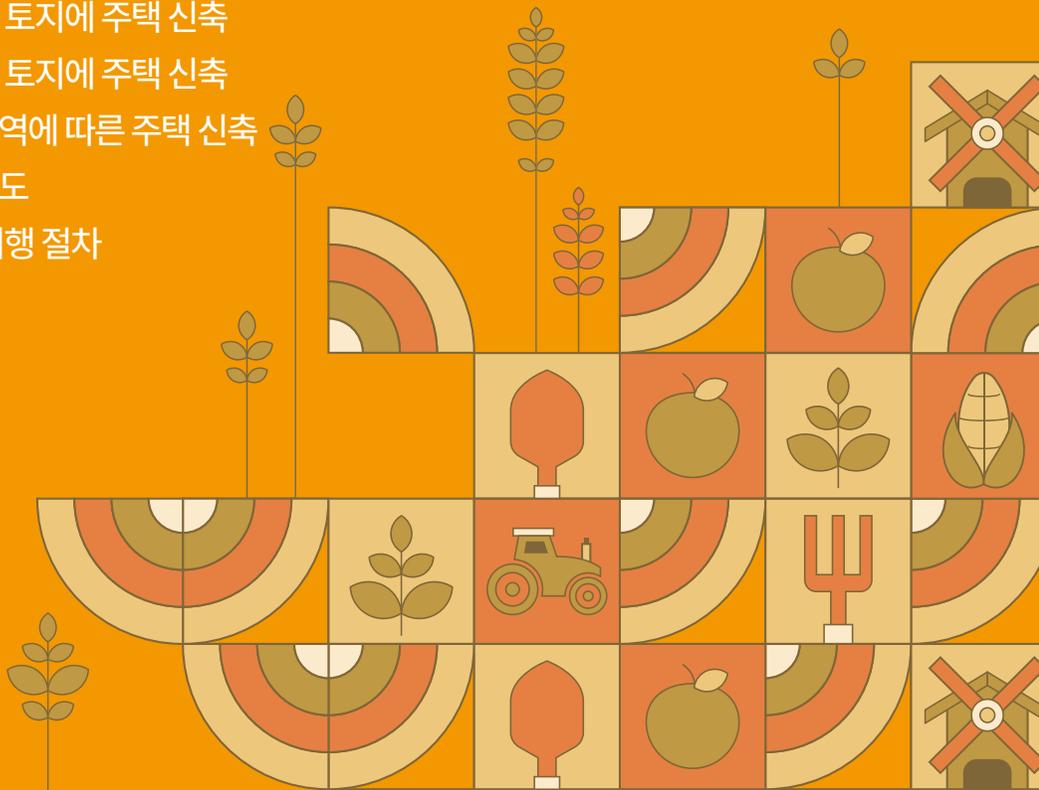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택 신축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주택 신축

농지은행 제도

급수 공사 시행 절차



1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

- 헌법 제121조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한 경우

- 1996년 1.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10,000m²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 수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1,000m²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자격 확인

-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함) 여부

■ 등기부 등본 확인

-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
- (2) 권리관계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군 계획시설 등으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장 답사

- (1) 농로, 수로, 경지정리 여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 (2) 상습 침수지역 여부
- (3) 교통 등 주위여건 기타
- (4) 인근 농지로부터 피해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함)·읍·면·동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 (1) 농업경영 목적(1,000m² 이상)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농업법인
- (2) 시험·연구·실습 또는 중요생산 목적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단체
- (3) 주말·체험영농 목적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4) 농지전용 목적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경우에 한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3) 시·도지사가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시험·연구·실습지등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4)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구계획서
- (5)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4)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의 참여 자격부여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법인도 등록가능

■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²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등록내용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71개 항목

■ 대상농지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생산농산물 출하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 괴산군 관할 : 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4길 39 ☎ 043-832-6060

3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² 함께살아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3만m ² 이상	3천~3만m ²	3천m ²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20만m ² 이상	3만~20만m ²	3만m ² 미만

■ 농지전용허가 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981. 7. 29.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축사, 버섯재배사, 간이저온저장고, 농막(20m²이내)은 농지전용 절차 배제 (*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준수)

■ 농지전용허가 절차



■ 허가신청 구비서류

- 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시)

4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

■ 산지전용허가 절차



■ 허가신청 구비서류

- 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이며, 사용·수익권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부터 1/1,200까지의 산지 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m²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임종·임상·수정·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 슈야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슈야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m²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m² 이상인 경우에 한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매년 부담기준을 참고

5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² 함께살아요

농지구입 등 세금감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감면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귀농일 이후 취득, 전입일 이후 취득) 농지+임야(2년 이내 농지조성, 지목변경)

■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밖의 주소지로 이전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 귀농일: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 귀농인의 정의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은 취득세의 50%를 경감
 -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 *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자경농민의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6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주택건축 절차



1. 부지선정

- 주거를 위한 주택은 지목이 "대"인 곳에 건축할 수 있으며, 농지·산지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지역인 경우 관련 인 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음
- 토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종합증명서' 확인을 통해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여 부지 선정

2. 사전준비

-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검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등

3. 건축설계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음.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제23조에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설계 할 수 있는 세부 조항 표기
-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참고(www.returnfarm.com)

4. 건축허가·신고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 건축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등의 공장건축물(2층 이하, 500m² 이하)
- 읍·면 지역의 농·어업용 창고(200m² 이하), 축사·작물재배사(400m² 이하)

*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효력 상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

5. 착공신고

-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661m²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시방서(설명서), 실내마감도 등에 대한 설계도서(신고시 제외)
 - * 착공신고필증 교부
 - * 건축주가 시공하는 경우(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 현장관리인 지정(건축법 제24조 6항)



6. 사용승인

-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
- 설계변경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첨부서류
- 사용승인 검사 실시(7일 이내)
-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 사용승인서 교부
 - * 건축물대장 기재
 -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7. 지목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면 지목변경 가능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기간 5일



8. 세금납부

-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한 그 취득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2.8% 적용한 금액으로 취득세 결정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취득세 납부



9.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주택의 신축 등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30일 이내에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함.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지목에 따른 인·허가대상

- 대·잡종지 등으로서 절·성토가 50cm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 전·답: 농지전용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 임야: 산지전용허가
- 기타(염전, 목장용지 등):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관련부서 사전검토



7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건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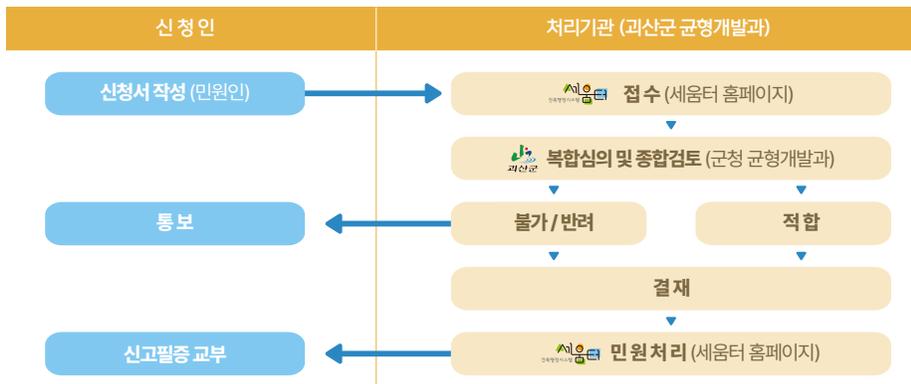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②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서류 구비
 - 연면적 합계 100m² 초과 단독주택: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 ③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지상권, 압류, 신탁권 설정시 동의서 제출)
-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5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관련법 협의서류(개발행위허가신청서,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 오·하수계획도,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등)
- ⑥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구조도, 구조계산서(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 구조도만 제출)
- ⑦ 재축일 경우 재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화재증명원 등)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가. 바닥면적 합계가 85m²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인 건축물의 건축

다. 대수선(연면적 200m²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라.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같은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²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²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입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②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가. 건축사 설계 대상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 된 건축물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

나.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m²미만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 200m²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에 한함)

8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과) 함께살아요

건축물 착공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 ① 착공신고서
- 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③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중 ㉠<삭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균형개발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인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대수선하는 모든 건축물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검토사항

- 계약서 및 공사계획, 건설업자 시공제한 대상여부 및 품질관리 계획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함)

■ 유의사항

- 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
-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9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괴산愛 함께살아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택 신축



① 토지 알아보기

토지 구입 전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보기

토지의 형태와 경계, 진입로 등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정보 확인

1 토지(임야)대장

지번, 지목, 면적



2 지적(임야)도

위치, 경계, 형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용도, 행위제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4 부동산 등기부

토지 소유자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 진입로가 없는 토지(맹지)는 건축이 어려워요.
- 마을길 등의 도로가 있더라도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적도와 항공사진 으로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 허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② 토지구입

토지의 구입은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

진입로, 혐오시설 인근, 생활인프라, 주민과의 유대가능성 확인.

공인 받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및 신고

- 세금은 기간 초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 부과해요.
-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6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③ 주택 건축하기

주택의 건축에서 입주까지 절차 알아보기

주택을 건축하려면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등 절차 복잡. 건축법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는 설계부터 건축에 따르는 행정절차까지 대행서비스



④ 지목 변경하기

건축물이 준공되면 “대”로 지목변경 가능

지목이 전, 답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농지전용허가서를 첨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서를 첨부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목변경 불가



토지이동정리(지목변경)는 지적담당 부서에 신청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신청, 등기부등본 토지표시도 일괄 변경

* 등기축탁은 지목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청에서 등기소로 신청 및 소유자에 통보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 토지의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지목이 달라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인상 차액의 2%가 부과되니 알아주세요.

⑤ 세금납부와 등기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납부, 시군청 및 위택스 이용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추가 부담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 토지구입부터 주택 건축까지 취득세를 여러 번 납부해요
- 토지구입, 주택 건축, 지목변경에 따라 각각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 건축에 따른 세금납부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

등기 절차는 법무사 및 변호사 등에 대행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10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 소유자 확인

오래된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 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

* "빈집" 정보는 각 시군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 가능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곤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을 증·개축하는 등 구조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필요

■ 건물이 있는 토지에 신축하려면 기존건물 철거 필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철거 완료 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말소

- *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연면적 200m² 이상 주택 철거 시 석면조사 전문기관의 "석면 사전조사" 필요
- * 단,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철거 가능



이것은 꼭 알아주세요!

- 농촌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있어요.
- 건물 구입 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가 어려워요.
- 철거하기 전에는 모든 인허가가 제한되니,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장은 있으니, 반드시 공적장부를 확인해야 해요.

11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토지용도지역에 따른 주택 신축



주요 용도지역에 따른 주택 설치기준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 농사를 전업으로하는 세대주가 농업인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660㎡이내 농지전용 허용
- 1년간 면적 1,000㎡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 조건

2. 비농업 진흥지역 농지

- 1,000㎡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 규모는 100㎡이하
- 농지소재지 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 즉시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3. 보전산지 임야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갖추고 산지전용 통해 주택건축 가능
-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600㎡이내,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까지 전용 허용

4. 준보전산지 임야

- 도시민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 건축가능. 단, 산림훼손허가를 받아도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설치 가능



12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과산愛 함께살아요

농지은행 제도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1577-7770/www.fbo.or.kr)

1. 농지규모화사업

-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농지매매 사업	<p>비농가, 고령은퇴 및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또는 경지정리된 논, 밭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4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 이상인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상환조건 : 15~30년 균분 상환 •지원상한 : (가격) 논 30천원/3.3m², 밭 35천원/3.3m² (면적) 소유면적 포함 농업인10ha
장기임대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 :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5~10년)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임차농지 :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지원조건 :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지원상한 : 제한없음
교환분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농지가격 차액을 지원하거나 경지정리·집단 환지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원 •지원조건 : 10년 균분 상환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음.

2.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탁대상	임대차 허용농지, 자경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
수탁기간	5년 이상(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임대차료 결정	그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임대료 지급	매년 약정 임대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5%)를 공제하고 지급
임차인 선정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임차신청을 받아 선정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점에서 잔여기간 총 임대차료의 11%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에 따른 양도차액 발생시 비사업용(양도차익의 60% 과세)이 아닌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아짐.

3.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은퇴, 이농 전업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030세대 지원 대상자,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매입대상자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매입대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매입가격	감정평가 금액
매입단가 상한	25,000원/m ² * 단,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시지역 50,000원/m ² , 충청남도, 경상북도 시지역은 35,000원/m ²
임대 대상자	전업농,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기타 영농하고자하는 개인·법인 등 *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우선 지원
임대기간	5년(5년 단위로 이용실태를 평가 후 재계약)
임대료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4. 농지연금사업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가입대상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지 3ha이하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농지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 그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함
연금수령액	감정평가 금액
수령방식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X평가율X농지면적 * 담보농지 가격 평가율: 개별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70% (연령) 부부 중 연령이 낮은자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 결정 - 기간형(5, 10, 15년),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지급)
신청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 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



급수공사 시행절차 (대략 2~3주 소요)



■ 주택,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 급수공사 신청 시 유의사항

1. 건축주-토지주가 같은 경우
 - ▶ 직접 방문하여 급수공사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2. 건축주-토지주가 다른 경우
 - ▶ 건축주가 급수공사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토지주-토지사용승낙서(인감 첨부) 지참하여 신청 가능
 - ▶ 토지주가 급수공사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건축주-위임장(인감 첨부) 지참하여 신청 가능
3. 제 3자가 급수공사 신청 할 경우
 - ▶ 건축주-토지주가 같은 경우 → 신청인 신분증, 건축주-위임장(인감 첨부) 지참하여 신청 가능
 - ▶ 건축주-토지주가 다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건축주-위임장(인감 첨부), 토지주-토지사용승낙서(인감 첨부) 지참하여 신청가능
4. 급수공사 관로 매설에 타인 토지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 해당 필지 토지주-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첨부) 필요
5. 급수공사 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 필요
6. 필요 시 타 관계법령(하천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 · 허가 자료 요구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농막만 해당) 급수공사 신청 시 유의사항

-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정화조 신고필증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 등 급수신청 시 유의사항과 같음